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383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1.

발 의 자:이종배·윤영석·김예지

태영호 · 성일종 · 김성원

최승재 • 이종성 • 추경호

김선교 · 홍문표 · 임이자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영화발전기금의 용도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영 화진흥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한국영화 자 막상영 및 화면해설상영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.

그런데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하여 자막 등을 지원하는 영화는 연간 평균 10여 편에 불과한 실정으로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이 영화를 용이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더 필요한 상황임.

또한 장애인의 비디오물 관람을 위한 자막 등을 지원하는 비디오물 은 더욱 열악한 실정임.

이에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

또는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, 한국수어 통역,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관람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(안 제38조의4 및 제49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8조의4(장애인의 영화 향유권) 영화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에 접근 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, 한국수어 통역, 화면해설 등을 제 공하여야 한다.

제3장제1절에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9조의2(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)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, 한국수어 통역,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38조의4(장애인의 영화 향유권) 영화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향 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
	영화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 도록 폐쇄자막, 한국수어 통역,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 다.
<신 설>	제49조의2(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)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사람과 동등하게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, 한국수어 통역,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.